

## 화학과 대학원 추가규정 및 개정 (2007년 1월 24일)

### 석사학위에 관한 규정(2006.3월 이후 입학자)

1. 화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위청구를 위한 석사논문 심사위원회(3인)는 논문지도 교수의 추천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3학기 때 구성한다.
2.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은 3학기 말까지 석사논문 심사위원회에 논문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석사논문 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전국규모 학술대회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SCI 등재 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에 대한 규정(2006.3월 이후 입학자)

1.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위청구를 위하여 박사학위 6학기 때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의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은 6학기 말까지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에 논문연구결과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박사논문 예비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연구결과를 구두로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3. 화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은 최종논문심사 6개월 이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예비 심사 규정은 2005년 3월 17일의 규정에 준한다.
4. 박사학위 최종심사위원회는 5명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예비심사위원중 적어도 3명은 최종심사위원회에 포함된다. 최종심사위원회에는 2명의 외부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1명은 반드시 외부전문가이어야 한다.
5.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이 학위청구 논문심사를 요구할 때는 SCI 등재학술지에 3편의 논문을 발표하거나 혹은 SCI 등재학술지 발표논문의 IF 지수 합이 60이상이어야 한다. 발표논문 중 1편은 반드시 해당학생이 제1저자이어야 한다. 단 지도교수가 제1저자인 경우 제2저자라도 제1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이 추가규정 혹은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2005년 3월 17일의 규정에 준한다.